

<p>제2020-30호 2020년 2월 14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451호	「154kV 여수TP -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 및 의견제출	3
○ 여수시 공고	제2020-457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 입찰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0-463호	도로지정공고(울촌면 취적리 114-1번지 외 3필지)	13
○ 여수시 공고	제2020-470호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 입법예고	14

기 타

회 람								
--------	--	--	--	--	--	--	--	--

[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여수TP -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02.14 .

여 수 시 장

- 사 업 명 : 「154kV 여수TP -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기간 : 2020.02.14. ~ 2020.02.28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여수시 시청로 1), ☎ 061-659-3611
 - ※사업시행 내용 문의처 : 한전 광주전남본부 용지보상사무실 ☎ 062-260-5781
- 의견제출기간 : 2020.02.14. ~ 2020.02.28.
-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3-2번지 도로 104㎡ 등 8필지(1,274㎡)
 - 토지소유자 : 김*희 등 10명
 - 관 계 인 : 한국****등 2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목록(지장물)

154kv 여수TP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수용지장물의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m ²)	단가/금액	성명	송달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1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 143-2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104m ²	10,650/ 1,107,600	김*희	전남여천군삼일면 중흥리1018 (등)전남여천군삼일 면중흥리1018		
2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4	구분지상권 (상공 21-36m)	334m ² *2741.5 /2850	9,940/ 3,193,560	김*욱	전라남도여수시죽 림4길2-26 (등)여천시중흥동46 9-2		
3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3- 2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53m ²	14,535/ 770,350	남*숙	전라남도여수시문 수1길26 105동503호(피오레 아파트) (등)전남여수시신기 동신화아파트140, 2동1503호		
4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3- 30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271m ²	15,535/ 4,209,980	"			
					4,980,330	소계(2 건)			
5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4	구분지상권 (상공 21-36m)	334m ² *27.19/ 2850	9,940/ 31,670	에어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501, 11층(삼성동브이플 렉스) (등)서울특별시강남 구신사동538 제이타워에이블록6 층		
6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3- 35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44m ² *17/66	15,535/ 176,060	"			
					207,730	소계(2 건)			
7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2- 3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223m ² *9/13	20,450/ 3,157,160	여천***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2(총무팀) (등)서울중구소공동 110	주식회사** 은행 근저당권	서울시중구회현 동1가203(여의도 중앙지점) (등)서울시중구 회현동1가203(여 의도중앙지점)
	"	"	"	"	"	"	"	한국**** 근저당권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16-3 (본점기업금융3 실) (등)서울시영등 포구여의도동 16-3
8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5	지상권 철탑	131m ² *1/2	36,150/ 2,367,850	유*구	경상남도김해시가 야로451번길9, 107동604호(롯데캐 슬가야아파트) (등)부산광역시금정 구기차로78-1(부곡 동)		

9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	구분지상권 (상공 20-41m)	1564㎡ *1/2	10,140/ 7,929,480	"	"		
					10,297,300	소계(2 건)			
10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5	지상권 철탑	131㎡ *1/2	36,150/ 2,367,850	이*경	부산광역시부산진 구새싹로183, 105동2402호(연지 동, 세동한신아파트) (등)부산광역시부산 진구새싹로183 105동2402호(연지 동, 세동한신아파트)		
11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	구분지상권 (상공 20-41m)	1564㎡ *1/2	10,140/ 7,929,480	"	"		
					10,297,300	소계(2 건)			
12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4	구분지상권 (상공 21-36m)	334㎡ *36.52/ 2850	9,940/ 42,500	지 에스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508 (역삼동) (등)서울특별시강남 구논현로508 (역삼동)		
13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3- 35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44㎡ *22/66	15,535/ 227,840	"	"		
					270,380	소계(2 건)			
14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산144	구분지상권 (상공 21-36m)	334㎡ *44.79/ 2850	9,940/ 52,170	한국*** 주식회사	전남여수시화치동3 73-15 (등)전남여수시화치 동373-15		
15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3- 35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44㎡ *27/66	15,535/ 279,630	"	"		
					331,800	소계(2 건)			
16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42- 3	구분지상권 (상공 20-63m)	223㎡ *4/13	20,450/ 1,403,180	한화*** 주식회사	서울중구장교동1 (등)서울중구장교동 1	한국**** 근저당권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16-3 (본점기업금융3 실) (등)서울시영등 포구여의도동 16-3
	물건의합 계	8건			35,246,340	10인		2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공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공유재산(토지)사용허가

나. 사용·수익허가기간: 허가(계약)일로부터 5년

※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

다. 재산의 표시

대상토지			사용·수익허가 면적(m ²)	예정가격(원) (1년 사용료)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여수시 평여동 986-1	임야	7,424.8	1,040	18,454,800	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공고 : 2020. 2. 14.(금) ~ 2. 27.(목)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시간

-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2020. 2. 23.(일) 10:00부터 2020. 2. 27.(목) 16: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0. 2. 28.(금) 10:00

라. 개찰장소 : 여수시 입찰집행관 PC(공영개발과)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5.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온비드 이용약관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온비드 시스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된 계좌로 전액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의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입찰자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될때에 입찰은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 -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대한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 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됩니다.
- 다. 낙찰자는 허가조건 각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제출서류

- 개인: 신분증, 도장
- 법인: 법인대표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14. 사용·수익허가 시 규제사항

가. 사용토지 내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원형에 변형을 가져오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연고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황이 나대지인 물건은 원칙적으로 현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운영기준 등에서 허용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 입찰 전에 여수시에 충분히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가”항의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및 해지 시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여수시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기타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15.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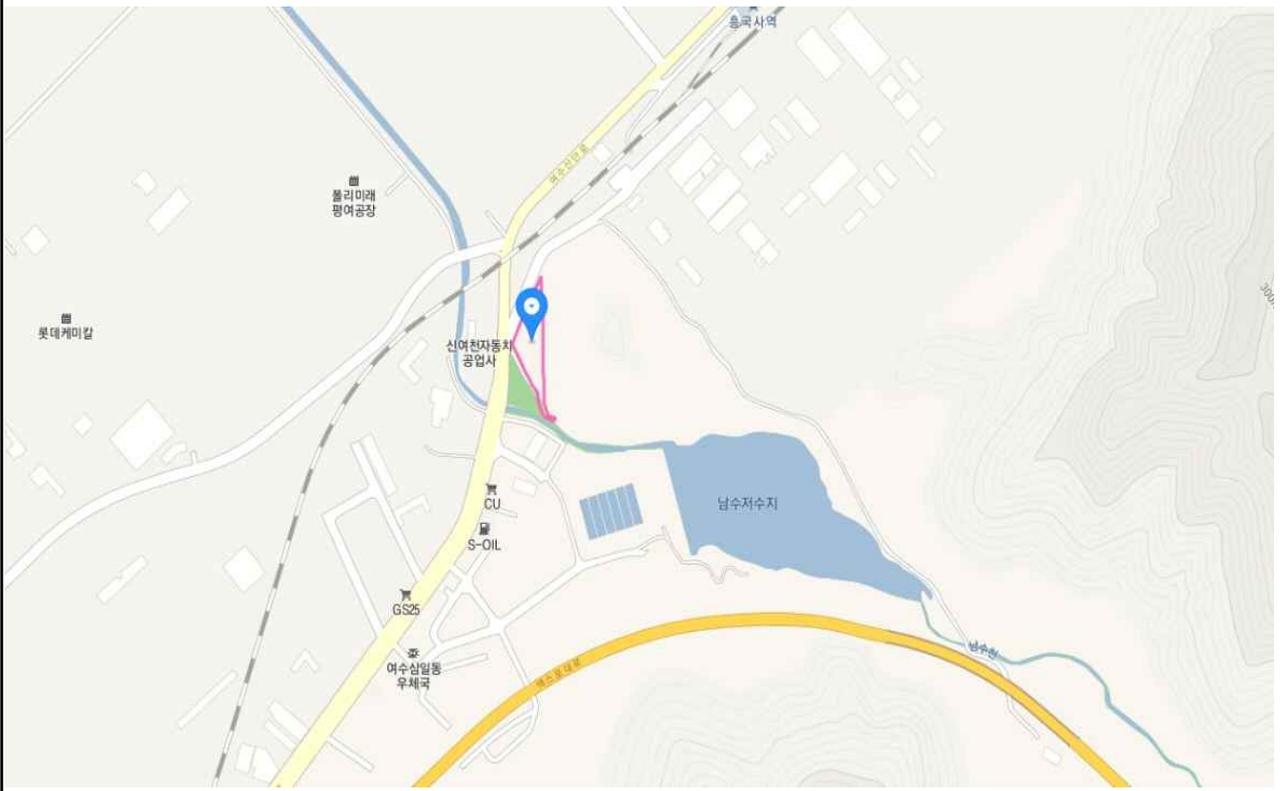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현장확인(별도 현장 설명 없음)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여수시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안내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 공고내용을 우선합니다.
-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 공영지원팀 공유재산담당자 (061-659-45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번 : 전남 여수시 평여동 986-1번지(임야)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14-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율촌면 취적리 114-1(외 3필지 112-1, 112-3, 114)	87	6	50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14.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 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여수시공고 제 2019-3113, 2019. 12.26)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됨

2. 주요사항

- 제1조(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제2조(정의)
 -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농기계임대료, 사용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등의 용어 정의
- 제3조(시장의 책무)
 -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 책무

- 제6조(농기계 교육)
 - 임대농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 실시, 농기계 관련 교육 실시 가능
- 제7조(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 농기계 임대 사용허가 가능 조건 명시
- 제8조(임대기준)
 - 1농가에 기종별 1대 2일 이내, 임대농기계 임대 일, 임대 시간, 임대 계약 제한 가능한 경우 등 명시
- 제9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비용,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품대금 징수 관련 명시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 임대료 반환 가능 조건 및 반환 임대료 명시
- 제12조(임대계약 취소)
 - 임대계약 사항 위반 및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악용하는 경우 등에 따른 임대계약 취소 가능 명시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요령을 익혀 안전 사용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이행 및 장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14조(농기계 매각 및 폐기)
 - 임대하지 않은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 과다로 효용성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
- 제15조(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등)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제17조(위원회의 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의 계획 적정성,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기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 개정안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4. 재 입법예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0.(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 농촌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보내실 곳

- 우편주소 : 우)5963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 전 화 : 061) 659-4437, 팩스 : 061) 659-5844
- 이 메 일 : anym121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1]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장 농기계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여수시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농업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계 등의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임대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란 농업인의 고장난 농기계를 마을단위로 일정예 따라 수리하거나,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시 수리와 수리요령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치 및 기능)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사용법 교육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5.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와 그 밖의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운영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되,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농기계의 수리에 관한 교육 실시
2. 임대한 농기계의 고장 민원 접수에 따른 출장 수리. 다만, 농번기에는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농기계(대형동력기계는 제외한다)의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농기계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관련 교육을 농기계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출고할 경우 조작성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제7조(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①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여수시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임대한다. 다만, 봄·가을 농번기철은 예외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하게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나 영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대는 제한한다.

제9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를 따른다.

- ②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임대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반환 일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 ④ 임차한 농기계의 운반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며,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형 농기계의 입고 또는 출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간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의 운반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 ⑤ 농기계 순회수리 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리한 부속품의 구입원가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기종당 3만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 ⑥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하고는 수고비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 ⑦ 농기계 순회수리 시 담당공무원은 징수한 부속품 대금을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이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 임대료 전액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③ 임대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4.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사용요령을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매각 및 폐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는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계속 임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하지 않은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여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여성농

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여수시 농업정책 분야 과장
2. 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장
3. 여수시 생활개선회장
4. 농업경영인여수시회장
5. 여수시품목별농업인연합회장
6.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7. 여성 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임대농기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13조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5. 17 조례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여수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수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불입하고, 농기계 부속품은 이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농기계의 수리 시 활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이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4조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u>농기계 고장 수리</u>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p> <p>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략) 3. “<u>농기계임대료</u>”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u>방제수수료</u>”란 ~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u>사용자</u>”란 <u>농기계</u>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6. (생략)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u>고장 농기계 수리</u>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제4조 병합 → 제4조></p> <p><조항 위치 변경(기존 제3조 → 제2조)></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u>여수시</u>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u>임대료</u>”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사용자</u>”란 <u>임대농기계</u>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현행과 내용 같음) <p><추가></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여수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업의 기계화 촉진</p>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 3. (생략)
4. 농기계의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광역방제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농기계 및 ~ 편성·운영한다.

-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관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④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 내용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제2조, 제4조 병합 → 제4조>

제4조(위치 및 기능)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 3. (현행과 같음)
4. 농기계의 사용법 교육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대농기계 및 ~ 편성·운영한다.

<제2항, 제3항 병합 → 제2항>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삭제>

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농기계의 수리 민원 접수 시에는 출장수리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 요청 시 농기계의 점검·정비 및 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 임대는 여수시 거주 농업인과 여수지역의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

② 농기계를 임대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④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되,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촌지역 순회하며 농업기계의 수리에 관한 교육 실시
2. 임대한 농기계의 고장 민원 접수에 따른 출장 수리. 다만, 농번기에는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농기계(대형동력기계는 제외한다)의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제6조(농기계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관련 교육을 농기계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는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이동>

<제6조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희망할 때에는 출고 전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출고할 수도 있다.

③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

③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출고할 경우 조작방법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제7조(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①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여수시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임대한다. 다만, 봄·가을 농번기철은 예외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하게 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 출고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 삭 제 >

④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

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 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광역방제기는 광역방제기 운영계획에 따라 방제면적을 기준으로 운영부서에 징수한다.

③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여수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용 후 반환 일시까지 농기계를 입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1항 각 호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농기계의 입고 또는 출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간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의 운반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⑦ 농기계 순회수리 시 수리 서비스를 제

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나 영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대는 제한한다.

제9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를 따른다.

< 삭 제 >

②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반환 일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 삭 제 >

④ 임차한 농기계의 운반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며,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형 농기계의 입고 또는 출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간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의 운반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 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

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리한 부속품의 구입
원가로 부속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기종
당 30,000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교
환 수리할 수 있다.

⑧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속품대금을 제
외하고는 수고비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⑨ 농기계 순회수리 시 담당공무원은 징수
한 부속품대금을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
금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
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와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임대료 2분의 1 감면
2. 제1항제2호 : 임대료 전액 면제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
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받은 사람에게는 수리한 부속품의 구입원
가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기종
당 3만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⑥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
하고는 수고비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⑦ 농기계 순회수리 시 담당공무원은 징수한
부속품 대금을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
해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
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한다.

1.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삭 제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
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한 경우

- 2. (생 략)
-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 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할 때

- ② 1. 2. (생 략)
- 3. 제1항제4호 : 계약기간 임대료의 2분의 1
- ③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4. 임대료를 체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

- 2. (현행과 같음)
 -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한 경우
- < 삭 제 >

- ② 1. 2.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③ 임대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 해야 한다.

제12조(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 4.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사용요령을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삭 제 >

②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시장은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농업정책 업무관련 과장과 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장, 여수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여수사회장, 여수시품목별농업인연합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여수시의회 의원 1명, 독농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매각 및 폐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는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계속 임대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하지 않은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여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호, 제3호 통합 -> 제3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여수시 농업정책 분야 과장
2. 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장
3. 여수시 생활개선회장
4. 농업경영인여수사회장
5. 여수시품목별농업인연합회장

4.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실무자로 한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1. 농기계 임대료 부과 및 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

6.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7. 여성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임대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조항 위치 변경(제2항, 제3항)>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4. 광역방제기 방제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과 전년도 임대료 징수·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생 략)

부칙(2010. 5. 17 조례 제759호)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 신 설 >

2.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2010. 5. 17 조례 제759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4조에 따른다.